



도민이 중심
신뢰받는 의회

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(제4차 교육위원회)
2024. 11. 26.(화) 10:00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성대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: 2024년 11월 14일

○ 회부일자: 2024년 11월 14일

3. 제안 이유

- 우수한 미래 체육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종목을 지역의 우수 시설, 체육지도자, 프로그램을 보유한 공공스포츠클럽을 활용하여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체계적인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함

4. 주요내용

- 가. “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충청북도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개정(안 제명)
- 나. 스포츠클럽 정의 개정(안 제2조제3호)
- 다. “학교스포츠클럽등”을 각각 “학생스포츠클럽”으로 개정(안 제3조 ~ 제6조, 제11조)
- 라. “지역거점형 공공스포츠클럽 전환” 삭제(안 제7조)
- 마. 지역거점형·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을 공공스포츠클럽으로 통합(안 제8조)

5. 검토 의견

가. 조례 제안 이유 검토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학교 자체적으로는 운영하기 어려운 종목이나 지역에 기반을 둔 학교운동부를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실력향상과 학생 선수 발굴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- 지역거점형과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으로 분리했던 조항을 공공스포츠클럽으로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 및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

나. 주요 내용 검토

- 안 제명은 “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충청북도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개정하는 것이며, 조례 본문에 규정된 학교스포츠클럽과 공공스포츠클럽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아 조례 목적을 명확하게 한 것임
- 안 제2조제3호는 ‘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’를 ‘법인 또는 단체’로 스포츠클럽 정의를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며,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참여가 가능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체육활동의 기회 제공과 효율적인 체육 종목 육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
- 안 제3조부터 제6조, 제11조는 ‘학교스포츠클럽등’을 ‘학생스포츠클럽’으로 개정하는 것이며, 제명 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사료됨

- 안 제8조는 제7조 ‘지역거점형 공공스포츠클럽 전환’ 조문을 삭제하고 기존 지역거점형과 종목연계형으로 분리 운영했던 클럽을 공공스포츠클럽으로 통합한 것이며, 학교운동부 또는 학교 자체에서 육성하기 어려운 종목을 전문성 있는 단체 또는 법인에 보조금 지원 및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담당자의 업무 경감과 소수 학생들에게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탄력적인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

- 다만,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대상을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까지 확대하여 무분별한 법인 및 단체가 지원해 학교 체육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참가 자격 요건을 명확히 설정하는 등 사업 추진 방안에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